

의안번호	2213209
의 퇴 인	정희용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계번호	25G53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,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
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,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30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에서 2031년까지 6년간 총 1조 5,165억원(연평균 2,5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법인세 과세 특례 연장(안 제72조)	-	-2,861	-2,929	-2,998	-3,068	-3,141	-14,996	-2,999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 세 연장(안 제87조의2)	-33	-33	-34	-35	-35	-	-169	-34
합계	-33	-2,894	-2,963	-3,033	-3,103	-3,141	-15,165	-2,52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-
2	안 제87조의2 (농어가목돈마련저 축에 대한 비과세)	-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- (현행) 농어민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·증여세·상속세 비과세 - (개정안) 농어민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·증여세·상속세 비과세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-
2	안 제87조의2 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

- 개정안은 2025년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계
 - 징수기준에 따르면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향후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4년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며,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4년 이전 감면실적은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를 반영해 조정한 후 활용
 - 조정된 과세특례의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5년('20~'24년)간의 실적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나.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 연장의 경우, 2025년의 동 저축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 저축의 2025년 규모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
 -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 일몰기한 5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

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 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2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영업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 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 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 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9% ²⁾	9%
	2~20억원		
	20~200억원	19% ²⁾	12%
	200~3,000억원	21% ²⁾	
	3,000억원 초과	24% ²⁾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 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%p씩 높은 세율 적용

- (특례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,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,11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,173억원 수준으로 감소
-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3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과세특례 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173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 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○ 2024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억원)	
합 계	3,172	41,728	-	4,236	-	7,409	-3,173
2억원 이하	855	615	9	56	10	55	1
2~20억원	1,801	15,092		1,361	20	2,507	-1,147
20~200억원	511	24,745	12	2,669		4,599	-1,931
200~3,000억원	5	1,276		150	22	247	-9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4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
실적을 조정

- 2024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
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5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4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3,172	41,728	-	-	-	7,826	-	-	7,409
2억원 이하	855	615	0.7	10	0.07	62	9	0.06	55
2~20억원	1,801	15,092	8.4	20	1.5	2,658	19	1.4	2,507
20~200억원	511	24,745	48.4		9.5	4,847		9.0	4,599
200~3,000억원	5	1,276	255.2	22	51.9	260	21	49.4	247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4년 기준 11.6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6]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4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율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이전 기준		'22년 세법개정 이후 기준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4,236	7,826	3,590	7,409	3,173	-11.6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4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면, 최근 5년간 특례실적은 연평균 2.4% 증가함

[표 7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가율 (‘20~‘24년)
특례 실적	조정 전(A)	3,271	3,347	4,230	5,113	3,173	-
	조정 후 (A×[1-11.6%])	2,891	2,958	3,738	4,519	3,173 ¹⁾	2.4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2.4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8]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
세수효과	-2,861	-2,929	-2,998	-3,068	-3,141

3) 추계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2,861억원, 2031년 3,141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4,996억원(연평균 2,99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31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72조)	-2,861	-2,929	-2,998	-3,068	-3,141	-14,996	-2,999

나.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

1) 조세지출 실적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관련 최근 조세지출실적은 2021년 35억 원, 2024년 63억 원 등으로 2024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 후 (2021~2024년 연평균 21.6% ↑), 2025년 42억 원 수준으로 감소
 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·임·어업 및 축산업 종사자가 연간 240만원 한도(만기 3년 또는 5년) 가입 시 약정이율과 저축장려금 지급

[표 10]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 ¹⁾	연평균 ²⁾
조세감면액	35	37	43	63	42	
(증감률)	(△12.5)	(5.7)	(16.2)	(46.5)	(△33.3)	(21.6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1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2) 추계 방법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2025년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여 조세지출액 전망
 - 동 저축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025년 저축 규모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후 금리 전망을 반영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
 - 현재 향후 수신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이자율의 전년대비 증감률에 따라 2025년 이후 조세지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
- 국고채 3년물의 이자율은 「2026년 NABO 경제전망 2025~2029」(2025.9.)의 전망치 활용

[표 11] 연간 시장금리 최근 추이 및 향후 전망

(단위: %)

구 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국고채 3년물	3.6	3.1	2.4	2.4	2.5	2.6	2.6
(증감률)	-	(△130%)	(△226%)	(0.0%)	(4.2%)	(4.0%)	(0.0%)

자료: 2024년까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, 2025년부터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

3) 추계 결과
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함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는 2026년 33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169억원(연평균 34억원)으로 추계

[표 12]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 (안 제87조의2)	-33	-33	-34	-35	-35	-169	-3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